**‘SSULOOK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**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SSULOOK 으로 한다.**

**제 2조 [목적]**

**① SSULOOK은 숭실대학교를 대표하는 패션 커뮤니티로 성장하고,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숭실대 학우들에게 패션에 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.**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**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**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**① 본 동아리 임원진은 회장, 임원진으로 하며 기본 6개월을 임기로 정한다.**

**② 다만 부득이하게 임원진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최소기한 1개월을 임기로 한다.**

**②-1 지속 불가능한 상황은 개인 목적성 휴학을 제외한 휴학상황들을 지칭한다.**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**① 회장은 동아리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선출한다. 임원진은 지원을**

**받아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.**

**제 3조 [임원진]**

**① 회장은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제권한을 가지며 회장이 부재 시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**

**대리한다.**

**② 부회장 및 운영진은 동아리 내부에서 요구되는 여러 사한들을 검토하여 서류화하고 회장이 부재 시 회장의 대리 임무를 행한다.**

**③ 회장은 동아리 내부 회비와 지출 내역을 관리, 검토하며 결제문서를 작성한다.**

**제 4조 [집행부]**

**① 본 동아리의 집행부는 회장, 부회장, 임원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임원진 동의하에 집행부를 편성할 수 있다. 집행부의 경우 내부 회칙 위반자 징계 및 활동의 감사를 위해**

**편성 될 수 있다.**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**① 집행부 회의는 월 1회를 기본으로 한다.**

**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.**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**① 본 동아리의 회원 자격은 숭실대 재학생을 기본으로 하며 동아리와 관련된 활동 시 동아리**

**의 자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.**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**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이 정한 규칙을 따른다.**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**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**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**① 매달 화요일에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한다. 내부 사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.**

**제 2조 [총회]**

**① 총회는 최대한 많은 정회원이 모일 수 있는 일시를 잡아서 여는것으로 하며 한 학기에 최대**

**2번 개최할 수 있다.**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**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**

**제 2조 [회비]**

**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**

**한다.**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**① 결산결과는 총회 및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**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**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 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.**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**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회칙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.**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**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.**

* 다음은 작성 예시안입니다.
* 날짜 및 명칭 등은 모두 예시이며, 동아리 상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.
* 작성 시, ‘000’ 및 소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000 동아리 회칙 (예시)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000”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(각 동아리 목적에 맞는 내용 기재)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000 을 수행한다.

③ 총무는 000 을 수행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.

②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1. 000

2. 000

(각 호는 동아리 별 상황에 맞는 내용 기재)

③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와 월 2회 이상 진행한다.

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(각 동아리 별 상황에 맞는 내용 기재)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(각 동아리 별 상황에 맞는 내용 기재)

**제 2조 [총회]**

(각 동아리 별 상황에 맞는 내용 기재)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(등록에 관한 내용은 모든 동아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니, 가급적 그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)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0000.00.00]

개정 1판 [0000.00.00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